

교육용자동차확인신청서

접수번호		접수일자	처리기간 100일
신청인	성명 (법인명)	생년월일 (사업자등록번호)	
	주소	전화번호	
자동차	차명	차량번호	
	차종·용도	구입일자	
	차대번호		
주 사용지			

「도로교통법 시행규칙」 제10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능교육용 자동차,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 및 도로연수교육용 자동차를 운행하려 하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시·도경찰청장 귀하

첨부서류		
신청인 제출서류	1. 기능교육용 자동차: 자동차제작증 사본 및 보험(「도로교통법 시행령」 별표 5 제9호가목(1)에 따른 보험을 말합니다)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2.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 및 도로연수교육용 자동차: 자동차(종합)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자동차등록증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	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	
신청인	(서명 또는 인)

처리절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